

[] 환경오염피해

[] 석면피해

[] 살생물제품피해

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 재심사청구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30일 (유의사항 참고)
청구인	성명	생년월일	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
	주소		
최초 결정 내용	최초 결정일	최초 결정이 있음을 안 날	
	결정내용		
재심사 청구 관련 고지유무 및 그 내용			
재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	(별지 기재와 같음)		

- ☐ 「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
- ☐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
- ☐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10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장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〇〇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재심사 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

유의사항

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의 처리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구비서류 미비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.

처리절차

